

# 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448
----------	-------

제출년월일 : 2024. 5.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내용 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적합성을 높이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관련 내용 정비(안 제1조)
- 정의 관련 내용 정비(안 제2조)
-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내용 정비(안 제3조)
- 대행자 지정 관련 내용 정비(안 제6조)
- 심의 등에 관한 내용 삭제(안 제8조)
- 시정명령 관련 내용 삭제
- 위반자에 대한 조치 관련 내용 정비 및 신설(안 제9조)
- 시행규칙 관련 내용 정비(안 제10조)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3】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붙임 4】

사전예고(결과) : 첨부(의견 있음) ※내부 부서의견 반영

입법예고기간 : 2024. 03. 27. ~ 2024. 04. 16. (20일간)

기타 참고사항

현행조례(전문) : 【붙임 5】

입법예고 결과보고 : 【붙임 6】

방침결재문: 【붙임 7】

## 【불임 1】

# 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을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 2”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로법」”을 “「도로법 시행령」”으로 하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도로관리심의회”로 한다.

제6조 중 “교통영향평가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심의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소통대책을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에 대행하여 심의·조정하며, 제3조제2항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제출하는 다음 달의 1일부터 30일 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4조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행자에게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건설도로하천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건설도로하천과장 김기선
	담당·팀장 직위·성명	도로시설1팀장 이동규
	담당자 성명·전화	신상근 (행정 2434)

## 【불임 2】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도로”란 「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1. ----- 「도로법」 제23조--- -----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제3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 또는	제3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 ----- -----

착공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  
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도로점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  
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수  
립대행자에게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심의 등)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소통대책  
을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에 대  
행하여 심의·조정하며, 제3조  
제2항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제출하는 다음 달의 1일부터 30  
일 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1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연장사  
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시행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 「도로법 시행  
령」 ----- 도로관리심의회  
-----.

제6조(대행자 지정) -----  
----- ----- 교통영향평가대  
행자-----  
-----.

제8조(심의 등)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소통대책을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에 대행  
하여 심의·조정하며, 제3조제2  
항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제출  
하는 다음 달의 1일부터 30일  
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에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15  
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연장사  
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시행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도로관리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정명령) 시장은 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로법」 제8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시행자가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99조를 적용하여 고발하여야 한다.

#### <신 설>

제11조 (생략)

#### <삭 제>

제9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4조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행자에게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0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 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9-448
----------	-------

제안년월일 : 2024년 6월 10일  
제안자 : 도시환경위원장

### 수정이유

- 상위법령에서 규율 위임한 근거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조례 목적에 근거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를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제4호”로 수정(안 제1조)

# **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를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제4호”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 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도로법 시행령」 제28조</u> 제1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도로법 시행령」 제54조</u> 제5항 별표2----- ----- ----- ----- ----- ----- -----. ----	제1조(목적) ----- <u>「도로법 시행령」 제54조</u> 제5항 별표2제4호----- ----- ----- ----- ----- ----- -----.